

붙임 2

우대사항

구분	대상	서류전형			면접전형		
		3%이내	5%	10%	3%이내	5%	10%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보훈 대상자 (취업지원 대상자)		○	○		○	○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	장애인	○			○		
	중증장애인		○			○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	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	○			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	북한이탈주민	○				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	다문화 가족 구성원	○					
「아동복지법」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○					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	경력단절여성		○				
전문자격증 소지자 (실무경력 불필요, 자격증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우대)		CFA, FRM(GARP), 세무사, 보험계리사	국내변호사,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				

- 위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40% 이상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,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우대사항 요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하며, 상기 대상자일 경우 전문 자격증과 중복 적용 가능(단, 전문 자격증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,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인정)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3명 이하 모집단위에서 전형별 가점합격자 미발생(단,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가능)

-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적용 비율과 보훈 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, 누락 시 가점 및 지원 자격 검토에서 제외됨
- 전형단계별 가점기준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
-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,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함